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9

발의연월일: 2020. 12. 01.

발 의 자 : 임이자 · 정희용 · 최승재

이주환 • 이 용 • 김성원

한기호 · 권명호 · 박성민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2008년 이천 물류냉동창고 화재 참사로 40명이 사망하여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망·상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물 취급에 있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한편,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임.

일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 분석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징역형이 46.9%, 2년 이상 징역 형은 9.4%로 나타났고, 벌금형의 경우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이 전체 46.5%, 3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0.2%임.

그러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이들의 관리 소홀과 부실한 관리체 계를 방치하는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 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의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 나.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수탁자와 함께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 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조).
- 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
- 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 사. 법무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 재해로 처벌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법무부장관은 중대 재해에 따른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함(안 제9조).
- 자.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사업

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 도록 함(안 제10조).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대 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로 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 다. 그 밖에 가목, 나목의 공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

- 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 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
-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5. "사업주"란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 물 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 6.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장·제 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 7. "경영책임자"란 제6호의 대표이사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 8.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사람

-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1.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된 감독의 지적사항
 - 3. 자신이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및 제조물에 대한 점검
 - 4.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나 기관이 그 사업장 내에서 제3자에게 자신의 사업 일부를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는 제3자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전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기업의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과징금 등) ① 법무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장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

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④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기업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기업에게 10억원 이상 3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9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제7조에 따른 처벌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절차와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다.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업주·경영책임자와 기업의 처벌, 과징금, 허가취소 등, 처벌사실 등의 공표,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